



#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보험급여과-605호(2021.1.28.)
-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-1924(2021.1.29.)

2. 요양병원\*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하며, 적용수가 및 산정방법은 “붙임 1,2,3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\*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(단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,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)

- 붙임 1.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
2.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혈액투석 가산수가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
3.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산정 방법 등 안내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

---

주무관 **김원희** 행정사무관 **조호식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1. 5. 14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2513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보험급여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6 팩스번호 044-202-3934 / [whk0710@korea.kr](mailto:whk0710@korea.kr)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